

의정정보 2012-11호

- | | |
|--------------------|-----|
| 1. 최근 제·개정 법령 | 3 |
| 2.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27 |
| 3. 최근 중앙정부의 주요 동향 | 83 |
| 4. 행복한 책임기 | 113 |

모두 보기

최근 제·개정 법령

- 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5)
- ②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10)
- ③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3)
- ④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17)
- 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20)
- ⑥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22)
- ⑦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24)
- ⑧ 자연재해 대책법(25)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9)
- ②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36)
- ③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43)
- ④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48)
- ⑤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55)
- ⑥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61)
- ⑦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66)
- ⑧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71)
- ⑨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76)

최근 중앙정부의 주요 동향

- ① 2013년부터 한글날(10. 9) 공휴일 지정(85)
- ② 100년 만에 인감제도 개선, 이젠 인감대신 서명 쓴다.(88)
- ③ 향토명품, 공공기관 선물용으로 판매촉진(90)
- ④ 운전 중 영상표시 및 기기조작 금지, 위반 시 처벌(94)
- ⑤ 정부재정과 대학 자체노력으로 대학생 등록금 35%경감(97)
- ⑥ 탐방열차 타고 백두대간을 한눈에 체험할 수 있는 길 열린다.(104)
- ⑦ 경제활력 창출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107)
- ⑧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연대보증제 폐지(109)
- ⑨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111)

행복한 책임기.....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113)

최근 제·개정 법령

최근 제·개정 법령

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②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10
③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④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17
⑤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
⑥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2
⑦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24
⑧ 자연재해 대책법	25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2012.11.15, 시행 2012.11.15]

1. 제정이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의 할당·거래,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및 배출권의 제출·이월·차입·상쇄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 보건·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2조)

- 1) 기획재정부장관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나. 주무관청 및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고시(안 제6조)

- 1) 배출권 할당 업무 등을 담당할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정함.
- 2) 주무관청은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다. 배출권 할당의 기준(안 제12조)

- 1) 주무관청은 법에서 정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등 외에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하도록 하고, 세부 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및 무상할당 업종 기준(안 제13조 및 제14조)

- 1)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은 1차 계획기간에 100퍼센트, 2차 계획기간에 97퍼센트로 하고, 3차 계획기간 이후에는 9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하되,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2) 주무관청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배출권을 전부 무상 할당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연평균 매출액 및 수입액 대비 연평균 무역액의 비율인 무역집약도가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대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권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의 비율인 생산비용발생도가 30퍼센트 이상인 업종 등으로 정함.

마.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안 제18조)

- 1) 업체별 배출권의 할당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할당결정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함.

- 2)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 배출권 추가 할당 및 배출권 할당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바. 온실가스 조기감축실적의 인정(안 제19조)

- 1) 주무관청은 목표관리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초과달성하거나 목표관리 실적에 반영되지 아니한 실적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하여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함.
- 2) 조기감축실적에 따라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의 수량은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사. 배출권의 거래단위 및 거래계정의 등록(안 제23조 및 제24조)

- 1) 온실가스는 온실가스별로 지구온난화 계수를 곱하여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으로 환산하도록 하고,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배출권 거래의 최소단위인 1 배출권으로 함.
- 2)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주무관청에 전자적 방식으로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은 주무관청이 직권으로 배출권 거래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함.

아.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및 업무(안 제26조 및 제27조)

- 1) 주무관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거래소 설치 및 지정 전에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2) 배출권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운영, 배출권 매매 및 분쟁의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자.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 1)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위하여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는 명세서 및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함.
- 2) 검증기관은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명세서를 검증하는 경우 명세서의 내용이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및 실제 배출량과 명세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함.
- 3) 주무관청은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 및 검증보고서에 대한 확인 및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하도록 함.

차. 배출권의 제출 및 이월·차입(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 1)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는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의 제출을 위하여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2)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제출하여야 할 배출권의 수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는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배출권의 10퍼센트로 함.

카.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상쇄(안 제38조부터 제41조 까지)

- 1)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내용의 사업범위에서 발생하여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한정하도록 함.
- 2) 배출권의 제출을 갈음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을 제출할 수 있는 한도는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타. 과징금 및 가산금 부과기준(안 제42조 및 제43조)

- 1) 배출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업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배출권 제출의무가 있는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정함.
- 2) 주무관청은 과징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0개월의 범위에서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공포 2012.11.12, 시행 2012.12.1]

1. 제정이유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 11211호, 2012. 1. 26.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 및 설립인가, 임직원 겸직의 허용 범위 및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범위 등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운영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등의 유사 명칭 사용 금지(안 제2조)

- 1)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나.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 1)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함.

다. 공정거래법의 적용 배제 요건 규정(안 제5조)

- 1)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등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도모함.

라. 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안 제6조)

- 1) 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함.

마. 임직원의 겸직 허용범위(안 제8조 및 제13조)

-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소규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

바.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범위(안 제9조 및 제17조)

- 1)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재고 물품의 처리, 홍보를 위한 견본품의 공급,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의 사업 이용 등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범위를 정함.

사.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안 제11조 및 제12조)

- 1)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설립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를 500인 이상,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출자금을 5만원 이상으로 하여 설립인가 기준을 강화함.

아.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안 제15조 및 제16조)

- 1)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성격 및 규모의 다양성, 사업운영의 자주·자립·자치성을 존중하여 소액대출의 최고이자율 및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지급사유 및 한도 등 소액대출과 상호부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자.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안 제18조)

- 1)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총 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응급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등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차.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21조)

- 1)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감독권한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하되,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2012.11.12, 시행 2012.12.1]

1. 제정이유

인감의 제작·관리에 따른 일반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조·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45호, 2012. 2. 1.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절차와 활용 방법,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에 기재하는 성명(안 제2조)

-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에 기재하는 성명은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하며,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의 성명,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함.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 절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함.
- 2) 신분증으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신청인의 무인(拇印)을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하도록 함.
- 3) 위조·변조 및 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시 기재한 서명은 그 서명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의 다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방법(안 제6조)

- 1)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행정기관 등에 법률에서 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 지방공사, 특수법인 및 학교 등을 추가로 규정함.
- 2)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민원인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암호의 입력, 민원인이 추가로 신청한 본인 확인 절차 및 발급시스템 비밀번호 입력의 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함.
- 3) 행정기관 등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발급증에는 발급일시, 성명 및 용도 등을 포함하도록 함.

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및 철회(안 제7조)

부터 제9조까지)

- 1)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로 신청하도록 하고, 승인권자는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하는 비밀번호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도록 함.
- 2) 승인권자가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함.
- 3)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받은 민원인이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를 신청한 경우에 승인권자는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및 기록·관리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자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발급기관에 대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급기관은 발급기관,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주도록 함.
- 2)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사실에 관한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관리하도록 함.
- 3)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스템에 저장하고 관련 자료를 기록·관리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과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공포 2012.10.30, 시행 2012.10.30]

1. 개정이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제정·공포(2011. 9. 3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제2조 및 제3조)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사무총장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조정·확정하여 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함.
- 2) 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사무처의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함

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제4조)

- 1)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등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함.

- 2)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날짜, 법적근거,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게재하도록 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조)

- 1) 중앙위원회사무총장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의 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2) 선거 관련 사무, 정당 관련 사무, 정치자금 관련 사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관련 사무 등

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제6조)

- 1)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중앙위원회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 지명함.
- 2) 각급위원회의 경우 사무처장 및 사무국·과장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제7조)

- 1)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시대상 등(제8조 및 제9조)

1)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대상을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50만명 이상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내외의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연동하려는 경우,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의 경우 등으로 함.

2)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평가기관 중에서 선정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포 2012.10.29, 시행 2012.10.29]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741호, 2012. 4. 20.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되는 외국의료기관의 허가절차, 인력구성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절차 (안 제2조 및 제3조)

- 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의료기관 설립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개설허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체화 (안 제4조)

- 1)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외국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진료관련 의사결정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는 등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함

다.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 등 (안 제5조)

- 1) 외국면허소지자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등 외국면허자 배치가 필요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외국면허소지자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환자 친화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공포 2012.10.26, 시행 2012.10.26]

1. 제정이유

선박관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산업발전법」(법률 제11321호, 2012. 2. 17. 공포, 7. 1. 시행) 및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23호, 2012. 6. 29. 공포, 7.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운영 방법,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 및 절차 등(안 제4조 및 별표 1)
- 1)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심사표와 심사항목별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장에게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을 기업 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 배점 150점 중 120점 이상인 자를 인증대상자로 함.
- 나.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1)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정한 인증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다.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위탁(안 제17조, 제18조 및 별표 4)

- 1)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을 양성과정 및 심화과정으로 구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 2012.11.16, 시행 2012.11.1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예술인의 업무상재해에 관한 보호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법률 제11089호, 2011. 11. 17. 공포, 2012. 11.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170호, 2012. 11. 12. 공포, 11. 18. 시행)이 각각 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 영역에 관한 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을 정하고,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8 자연재해 대책법

[공포 2012.10.22, 시행 2013.4.23]

1. 개정이유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고 시에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에 예측되는 기간별·지역별 기온·강수량·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 변경(안 제12조제1항 등)

- 1)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그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함.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을 때에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며,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안 제16조의4 신설)

- 1)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하여금 미래에 예측되는 기간별·지역별 기온·강우량·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시행 등에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강화(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 1) 홍수 피해경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시장·군수·구청장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도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9
- ②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6
- ③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등 지원 조례 43
- ④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48
- ⑤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55
- ⑥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61
- ⑦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66
- ⑧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71
- ⑨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76

1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1. 제정 이유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안 제3조)

- 1) 예산편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참여를 보장
- 2)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사적 이용을 금지

나. 교육감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를 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1) 교육감은 예산편성 관련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
- 2) 주민은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1)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라. 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1)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인터넷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2)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음

3. 제정안 :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2012. 7. 17 ~ 2012. 8. 6 (20일간), 의견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붙임
- 2) 규제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관할 학교의 학부모
3.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주민참여보장 등) 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주민참여예산의 의견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교육청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의 수렴 등)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등)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1. 재정수반요인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 주민참여 보장 및 주민의견 수렴에 따르는 재정수반요인은 없음
- 위원회 등을 운영할 경우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수당 등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을 운영할 경우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극히 미미함

4. 작성자

부서명 : 정책기획관실 4급 장해광 (053- 757 - 8261)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 가. 대구광역시민에게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시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정진하도록 하며,
- 나. 나아가 대구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달구벌명인의 선정 및 자격요건(안 제3조, 제4조)
- 나. 달구벌명인의 추천(안 제5조)
- 다. 달구벌명인의 신청(안 제6조)
- 라. 달구벌명인의 예우 및 지원(안 제7조)
- 마. 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조치 필요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숙련기술장려법」에서 규정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북돋우어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달구벌명인”이란 대구지역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달구벌명인의 선정) ① 시장은 지역 내 우수 숙련기술자 중 대구광역시달구벌명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구벌명인으로 선정한다.

② 달구벌명인 선정인원은 분야와 직종을 고려하여 매년 5명 이내로 선정한다.

③ 생산 및 제조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분야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해당하는 직종일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선정 및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달구벌명인의 자격요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달구벌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에서 15년 이상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해 온 사람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달구벌명인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달구벌명인의 추천) ① 달구벌명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구청장 또는 군수
2. 지역단위급 경제단체의 장 또는 협회의 장
3. 대한민국명장회 대경지회장 또는 대구숙련기술회장

제6조(달구벌명인의 신청) ① 달구벌명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2.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3.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4.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② 자영업 등을 영위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확인서와 함께 지역에 거주하는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2명 이상이 확인한 공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신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지침을 준용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달구벌명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달구벌명인 증서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장려금은 매월 50만원씩 5년간 지급한다. 다만, 지급당시 지역 내 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않거나 현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③ 시장은 지역 숙련기술자 단체의 기술전수 활동에 달구벌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달구벌명인의 선정 취소) ① 시장은 달구벌명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인에 선정된 경우

2. 명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1항에 따라 달구벌명인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당해 달구벌명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달구벌명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③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주재 등 사무를 통괄한다.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숙련기술 소관 업무과장이 된다.

⑤ 위원 중 달구벌명인 신청자와 이해당사자인 경우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⑥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례 제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채점표를 소관과에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등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 가.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어 도내 학교, 농촌지역 및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 나. 이에 도차원의 석면슬레이트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나.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다.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시장·군수의 의무와 도지사의 지도·감독 등 시장·군수에 대한 철거 및 처리 등 비용 지원에 따른 조치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주거환경 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및 지붕 개량(이하 “철거 및 처리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을 다
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
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또는 빈집정
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3.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수 및 보수사업을 하는 경우
4.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범위) 제5조의 지원 대상에 대한 비용의 지원 범위는
지붕재 또는 벽체(壁體)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지붕개량·
철거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지원 계획의 시행에 따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내용 및 기관별 재원 분담계획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시장·군수의 의무)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철거 및 처리 등 비용을 지원받은 시장·군수는 시군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목적에 맞게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철거 및 처리 등 비용의 사용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상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비용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결과의 보고) 시장·군수는 해당 연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밖에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1. 제정이유

- 가.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 오고 가는 길로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이므로
-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함 (안 제2조)
- 나.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함 (안 제3조)
- 다. 경기도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도민은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라. 도지사는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조사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제7조)

- 바. 도지사는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8조)
- 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제10조)
- 아.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사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11조)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통학로”란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학교 및 어린이집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및 재정지원) ①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의 초등학교별 어린이 통학로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에 대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도 등의 책무) ① 경기도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도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군수는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군수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제작하여 교육하는 어린이 대상의 교통안전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하교 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도지사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경찰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 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관리청이 시장·군수인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통학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시·군 또는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1. 제정이유

- 가.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는 장소(버스정류장, 도시공원 등)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 나.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둠

2. 주요내용

- 가. 도지사는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 (안 제3조)
- 나. 모든 도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흡연자가 흡연할 경우 다른 도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안 제4조)
- 다.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안 제5조 제1항)
 - 1)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2) 시·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 3)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4) 그 밖에 도지사가 간접흡연 피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 라.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강원도보에 고시해야 함 (안 제5조 제3항)
- 마.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됨 (안 제5조 제4항)
- 바. 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해야 함 (안 제6조)
- 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흡연구역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함 (안 제7조)
- 아. 도지사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음 (안 제8조)
- 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 (안 제9조)
- 차.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 단, 강원도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설은 제외(안 제10조)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 등) ① 모든 도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도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시·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강원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지원 등) ① 도지사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도지사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강원도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경상북도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 가. 경상북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2년 6월말 기준 432,003명으로 고령화율이 16.0%(432,003명/2695,113명)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미 군위군을 비롯한 14개 시군은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 나. 이에 지역사회 마을단위의 대표적인 노인 여가·문화 활동 공간으로 건전한 여가선용과 경제활동, 건강증진 등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정보교류와 오락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의 운영과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 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 나. '경로당',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조례의 적용 대상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고필증을 교부한 도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3조).

- 라. 경로당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과 시행,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
- 마.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바.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3.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모든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조정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상북도내 경로당과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지원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4.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

5. 노인동공작업장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 제정이유

- 가.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우수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 나. 우수농식품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전개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로컬푸드 정책협회의 설치와 심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나.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협의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우수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우수농식품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전개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농식품”이란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도지사품질인증 등을 통해 생산되어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농축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2. “로컬푸드 정책”이란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농촌 주민들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수농식품과 관련된 모든 시책이나 정책을 말한다.

제3조(로컬푸드정책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로컬푸드 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로컬푸드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우수농식품 소비촉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과 연계한 로컬푸드 정책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
4. 민간차원의 소비촉진운동 전개와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 농수산물국장,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로컬푸드 관련 유통분야 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대표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4. 그 밖에 로컬푸드 및 식품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8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5조)
-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함(안 제8조)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란 도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처우 및 지위 향상의 적용 대상은 도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안정적인 직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조건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운영기관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을 위한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을 설정함(안 제4조)
- 나. 경상남도식생활 교육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식생활 교육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한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7조)
- 라.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추진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 마.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 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교육은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에절 교육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되며,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관계 기관·단체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교육은 관계기관,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계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⑤ 식생활교육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내 농수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제5조(식생활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식생활교육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경상남도 식생활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학교·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식생활교육의 평가)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교육계획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자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교육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 관계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수산해양국장, 복지보건국장,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농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
2. 경상남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단체, 식품유통업체, 생활협동조합, 농어업인 단체 등의 대표
4. 식생활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5.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도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속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교육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식생활교육의 지원) ① 도지사는 보육시설 및 학교에서 식생활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육시설 및 학교에서 식생활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교육 연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중앙정부의 주요 동향

최근 중앙정부의 주요 동향

- ① 2013년부터 한글날(10. 9) 공휴일 지정 85
- ② 100년 만에 인감제도 개선 이전 인감대신 서명 쓴다 88
- ③ 향토명품, 공공기관 선물용으로 판매촉진 90
- ④ 운전 중 영상표시 및 기기조작 금지, 위반 시 처벌 94
- ⑤ 정부재정과 대학 자체노력으로 대학생 등록금 35%경감 97
- ⑥ 탐방열차 타고 백두대간을 한눈에 체험할 수 있는 길 열린다 104
- ⑦ 경제활력 창출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107
- ⑧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연대보증제 폐지 109
- ⑨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111

① 2013년부터 한글날(10. 9) 공휴일 지정

- ◇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1월 8일(목) 입법 예고 했다.
- ◇ 한글의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1991년도부터 “국군의 날(10. 1.)”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 정부에서는 2005년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하여 정부 차원의 각종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해왔으나, 공휴일에서는 여전히 제외해 왔다.
- ◇ 지난 10월 9일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됨에 따라 정부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 한글날 공휴일 지정 83.6% 찬성('12.4.13. ~ 4.15. 문화체육관광부 실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글은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으로 그 상징성과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가 높다”면서
 - “한글날 공휴일 지정이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가 대표 브랜드로서 한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참고1

공휴일제도 변천 내역

연 도	공휴일 제정 및 개정내역	공휴일수
1949. 6. 4.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 일요일, 국경일(4), 1.1.~1.3.(3), 식목일(4.5.), 추석(음력8.15.), 한글날(10.9.), 기독교탄신일(12.25.)	11일
1950. 9.18.	○ 10.24.(국제연합일)을 공휴일로 지정	12일
1956. 4.19.	○ 현충일(6.6.)을 공휴일로 지정	13일
1975. 1.27.	○ 어린이날(5.5.), 석가탄신일(음력4.8.) 공휴일 지정 ○ 10.24.(국제연합일) 공휴일에서 제외	14일
1976. 9. 3.	○ 국군의날(10.1.)을 공휴일로 지정	15일
1985. 1.21.	○ 설날(음력1.1.)을 공휴일로 지정	16일
1986. 9.11.	○ 추석 다음날(음력8.16.)을 공휴일로 지정	17일
1989. 2. 1.	○ 설날전날(음력12월말일), 설날다음날(음력 1.2.) 및 추석전날(음력 8.14.)을 공휴일로 지정 ○ 1.3일을 공휴일에서 제외	19일
1990.11. 5.	○ 국군의날(10.1.), 한글날(10.9.)을 공휴일에서 제외	17일
1998.12.18.	○ 1.2일을 공휴일에서 제외	16일
2005. 6.30.	○ 식목일(4.5.)을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 제헌절(7.17.)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14일
2006. 9. 6.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의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공휴일 지정	14일

□ 조사개요

- 조사기간 및 업체 : '12. 4.13.(금) ~ 4.15.(일) / 리서치앤리서치
-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 조사방법 : CATI를 이용한 전화여론조사

□ 조사결과 주요내용

1. 한글날 공휴일 지정 찬성 : 83.6%

가. 찬성이유

- ① 국민들이 한글의 가치 및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 46.3%
- ② 청소년들에게 한글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23.7%
- ③ 한글의 위상 제고 및 한글의 세계화 18.1%
- ④ 휴일 및 여가 증가로 삶의 질이 향상 10.5%

2. 공휴일 지정이 필요한 국경일 또는 기념일로 57.5%가 한글날을 선택

가. 한글날(57.5%)>제헌절(15.4%)>식목일(12.2%)>국군의 날 (8.1%)

3. 64%가 한글날을 10월 9일로 인지

- 가. '09년도 88.1% 보다 24.1%p 감소, '11년도 63%와 비슷한 수준
- 나. 20대는 한글날을 10월 9일로 정확하게 인지하는 비율이 32.7%에 불과

4. 66.9%가 한글날을 국경일로 인지

- 가. '09년도 88% 보다 21.1%p 감소, '11년도 69.4% 보다 2.5%p 감소

5. 한글날 공휴일 지정시 나타나는 효과

- 가. (경제적 측면) ①휴식, 여가, 관광 등의 활동으로 노동생산성 향상 (33.7%) ②내수경기 활성화(21.3%) ③일자리 창출(13.9%) 등
- 나. (사회문화적 측면) ①한글에 대한 자긍심 증대(45.9%) ②국가브랜드 제고 및 한류 확산 기여(34.2%) ③삶의 질 향상(14%) 등

6. 한글의 위상에 대하여 57.2%가 높다고 평가

2 100년 만에 인감제도 개선, 이젠 인감대신 서명 쓴다.

- 올해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읍면동 등에서 발급 -

- ◇ 올해 12월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 행정안전부는 현행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절차와 활용방법·전자본인서명서의 승인절차 등을 담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1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2월 1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 ◇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1914년에 도입되어 그동안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그동안 국민들이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인감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 ◇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에서 “민원24 홈페이지(minwon.go.kr)”로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준비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해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이후 공공기관·법원 등으로 발급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 ◇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 “새롭게 실시되는 이 제도가 국민들의 민원편의와 함께 경제활동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이용을 요청했다.
- ◇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철저한 시행 준비를 위해
- 11월 1일부터 경기·강원권역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5,006명)을 대상으로 권역별(6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향토명품, 공공기관 선물용으로 판매촉진

- 행정안전부와 조달청간 업무협약(MOU) 체결 -

- ◇ 충북 단양의 백자, 경남 통영의 나전칠기, 경남 거창의 방짜유기 같은 지역 향토 제품의 디자인을 개선시키고 브랜드화한 ‘향토명품’이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의 선물용·기념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은 10월 26일(금) 오후 4시 30분, 정부중앙청사에서 향토명품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의 주요내용은 향토명품을 공공기관의 국가 선물용·기념품으로 판매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등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향토명품 판로 확대 추진 실무 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 ◇ 향토명품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에 25개 전통기술사업을 선정, 2013년까지 중점적으로 상품화·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 그동안 디자인 및 상품 개발을 완료해 지난 7월에 국립박물관 문화상품점에 입점했고 11월부터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도 입점하게 된다.
- ◇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인의 손을 거쳐 현대 문화상품으로 새롭게 탄생한 향토 명품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발전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사업기간 : 2011~2013(3년간)
- 사업대상 : 25개 사업(전통기술분야)
 - 장인기술(국궁, 낙죽장도, 화혜장 등), 공예자원(백자, 분청사기, 옹기, 토기 등), 전통기술(전통창호, 화문석 등) 등
- 소요예산 : 3년간 총 100억(특교세 50억, 지방비·자부담 50억)

□ 사업내용

- 1단계 : 기반 구축(시설 및 장비구입, 디자인·상품 개발 등)
- 2단계 : 사업화(브랜드 개발 및 지식재산 등록, 국내·외 마케팅 등)
- 3단계 : 자립 구축(고품격화, 국내·외 판매망 확충 등)

□ 기대효과

-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소득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백년 먹거리 및 지역 경제의 신성장동력원 육성
-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감각을 지닌 국격 있는 전통 문화상품 개발로 젊은층과 외국인의 접근성 제고
- 장인들에 대한 상품화·마케팅 마인드 제고로 전통의 재해석 능력과 창의적 상상력의 생성

□ 시범사업 현황(25개)

분야	품 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장 인 기 술 (5)	각궁 / 국궁 (서울 종로구 산업환경과)	국궁 활성화 사업	○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한국 양궁의 뿌리인 국궁의 체험, 교육·전시, 마케팅 등을 위한 ‘한국문화 콘텐츠’ 공간 조성
	낙죽장도 (전남 곡성군 경제과)	곡성 낙죽장도의 명품화·실용화 사업	○ 칼날에 새기는 전통 황금 상감문양 등 디자인 연구 및 명품화를 지원하여 지역산업으로 육성
	화 해 장 / 전통신발 (부산 사하구 경제진흥과)	전통신발 화해장 산업화	○ 화해장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전수공간 마련,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사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자 수 (전북 순창군 지역경제과)	순창자수 기능 전수 사업	○ 순창자수의 기능 전수를 통한 향토자원 맥 잇기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대금 (광주 동구 경제과)	대금제작기술 사업화	○ 대금제작 기술을 통한 전통악기의 대중화 및 실용화 사업
공 예 자 원 (10)	백자 (충북 단양군 지역경제과)	단양백자 명품화사업	○ 방곡도에촌의 단양백자 기반시설 확보로 생산 인프라 확충
	분청사기 (전남 무안군 경제정책과)	무안 분청사기 대표 브랜드개발 육성사업	○ 분청사기의 연구·개발을 위한 전시·교육·연구 공간의 조성으로 지역 산업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옹 기 (울산 울주군 문화관광과)	울주옹기브랜드 창출 사업	○ 외고산 옹기마을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을 통한 소프트 웨어 육성 및 공방, 아카데미 개설 등을 통한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토 기 (충남 홍성군 경제과)	갈산 토기 사업화	○ 갈산토기 제품의 다양화 및 고급화, 체험 프로그램의 강화, 친환경 제품으로서의 마케팅 전략 구사로 판촉 및 관광 수입의 증대
	제주 옹기 (제주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옹기 전승 보존 및 사업화	○ 전통옹기 생산기반 및 기술보존 교육시스템 구축, 디자인 혁신상품 연구개발, 화산토 도자기의 상품화 및 마케팅
	전통목기 (강원 인제군 지역경제과)	인제 전통목기의 명품화 사업	○ 세계 유일의 수작업 인제목기를 현대인 감각의 디자인 개발, 기획 전시, 국내외 마케팅 등을 통해 목공예 산업발전의 도모

분야	품 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10)	공예 방짜유기 (경남 거창군 경 제 과)	거창 방짜유기 산업화	○ 방짜유기제조라는 전통기술을 계승·발전시켜 다양한 실용 관광문화상품 개발, 기술계승인력 육성, 유기체험관 개설로 관광객 유치
	나전칠기 (경남 통영시 지역발전 추 진 단)	통영 나전칠기 사업화	○ 나전칠기 본고장으로 노동집약 산업의 명품화를 통한 고용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디자인 개발, 칠기 학교 설립 등)
	목 공 예 (전남 장흥군 환경산림과)	전라남도 목공예센터 목공예전수사업	○ 편백숲 우드랜드내 전통기술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전수관 등 설치로 목공예센터 활성화와 목공예 산업의 동반 육성 도모
	짚풀공예 (경남 의령군 경 제 과)	의령 짚풀에 체험관광 상품화 사업	○ 짚풀공예 신상품 개발, 짚풀공예 공장 설치, 짚풀공예 아카데미, 짚풀공예 체험관광 사업등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조성
(5)	전통 오광대 탈 문화상품화 (경남 김해시 경제진흥과)	김해 오광대 탈 전승 사업	○ 민속놀이 마당극인 오광대의 탈 문화상품 개발, 대량생산체제 구축, 전수공간(체험학습장) 설립 등
	전통창호 (충남 논산시 경제지원과)	전통창호의 계승발전과 산업화	○ 전통문양 창호의 현대식 아파트 도입을 위한 창호 설계 및 문양의 연구개발, 공동마케팅 시스템의 구축
	기 완초/화문석 (인천 강화군 경제교통과)	강화완초공예 명품화 사업	○ 고려시대부터 전승된 세계 유일의 화문석(왕골공예품)의 예술적 가치를 부각시켜 왕골 공예품의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소득 증대
	술 천연염료 (전남 보성군 경제산업과)	전통 천연염료 활성화 사업	○ 전통 천연염료 생산 및 천연염색 기술의 실용화를 통한 상품화, 고농축 천연염료 생산기반 시설 구축으로 산업화 도모
	(5)	백동연죽/ 담뱃대 (전북 남원시 경 제 과)	남원 백동연죽의 고품격 문화상품화
(5)	기 한 지 (전북 전주시 한스타일 관 광 과)	친환경 기능성 건축용 자재 개발 사업	○ 건축용 친환경 한지(창호지, 벽지, 장판지) 개발 및 설비, 공동브랜드 구축, 명품 상품화, 인증시스템 개발, 공동 판매장 구축
	타 숙성용기 (충북 충주시 경 제 과)	전통주 숙성용기 제작기술 상품화	○ 주류 숙성을 위한 서양 오크통 수입을 대체할 숙성 항아리의 생산을 통해 상품화·산업화 추진으로 지역 소득 증대
	기 공예촌 전통옷칠 생활용품(광주 남구 경제과)	공예창작촌 활성화 및 옷칠 공예품 개발	○ 문화와 창작이 있는 차별화된 복합문화공간 조성, 전통 옷칠기법 전승 및 후계자 양성 등을 통해 지역발전 도모
	술 전통문화 상품화사업 (전북 완주군 농촌활력과)	「할머니의 다듬이 소리」 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	○ 다듬이와 타 장르 협주에 퍼포먼스를 가미한 공연 전통 문화의 대중화와 세계화 추진(문화 콘텐츠 개발, 후계자 양성, 전수공간 조성)
	(5)	전통마을 상품화사업 (전남 순천시 경제통상과)	낙안읍성 공예자원 명품화 사업

4 운전 중 영상표시 및 기기조작 금지, 위반 시 처벌

-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3년 3월 시행 전망 -

◇ 디엠비(DMB)처럼 영상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기기를 운전 중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가 디엠비(DMB) 등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마련한 이후,
- 입법예고·규제심사 등을 통해 일반국민·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된 것이다.

※ 입법예고(6.28~8.7), 규제심사(8.30 완료), 법제처심사(10.15 완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먼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 표시 금지’로 강화했다.
 - 특히, 영상표시장치를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 포함)”로 정의해,
 - PMP, 태블릿 PC 등 다양한 IT기기가 보급·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 아울러, 운전 중 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 전방주시율(%) : 음주운전(72) > DMB 시청(58.1) > DMB 조작(50.3),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또한, 위와 같은 의무 위반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범칙금 최고 7만원(승합차 기준), 벌점 15점 부과 예정

◇ 한편,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비해 운전 중 표시가 제한되는 영상의 예외를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 최소화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 당초 표시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지리안내나 교통정보안내와 함께,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과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을 표시금지의 예외로 추가했다.

○ 또한,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라는 제한을 두어 동승자가 운전 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 과잉제한의 소지를 없앴다.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 올해 정기국회 중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경에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행안부와 경찰청은 관계관은 “운전 중 영상물의 수신·재생 또는 기기 조작 금지는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운전 중 영상표시 금지**(안 제49조제1항제11호)

○ 금지행위 : ‘시청’을 포함하는 ‘표시금지’로 확장

- 운전 중에는 주의 분산의 위험성이 있는 영상 표시행위까지 금지 하면서 예외* 규정을 둠

*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지리안내 및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 안내 영상,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 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 금지대상 : ‘DMB’에서 ‘영상표시장치*’로 확대

- 네게이션을 비롯해 휴대전화·PMP·노트북·태블릿PC 등 기기로 볼 수 있는 방송과 영상물 전체를 금지

* 영상표시장치란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로 운전자가 휴대 하는 것을 포함함

○ 금지위치 : ‘운전자가 운전 중에 볼 수 있는 위치’ 신설

- 운전석 뿐 아니라 조수석 등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할 수 있는 위치에서의 표시행위도 제한하나,
- 동승자가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여 과잉제한의 소지를 없앴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안 제49조제1항제11의2호)

○ 조작금지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신설

- 영상표시장치의 조작으로 인한 시야·주의력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중 조작을 금지(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운전 중 영상표시 및 영상표시장치 조작 처벌**(안 제156조제1호)

○ 위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 현재 DMB 시청금지 위반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제156조 제1호 개정,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

5 정부재정과 대학 자체노력으로 대학생 등록금 35%경감

- 교내외장학금 포함, 국가장학금 수혜학생 기준으로 약 50% 부담 완화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1월 7일 2조 2,5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과 6,000~7,000억원의 대학 자체노력을 포함한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가장학금은 2013년에도 정부와 대학의 분담(burden-sharing) 원칙하에 하후상박(下厚上薄) 지원과 I 유형(소득분위 최저지원)·II 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 I 유형 재원을 1조 5,5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한다.
 - 또한 시행 첫 해인 2012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증액된 5,000억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등 수혜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를 높인다.
- ◇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 국가장학 체계 기본 구조

국가장학금		대학 자체노력	기타
I 유형 (소득분위 최저지원)	II 유형 (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1.55조원 - 기초 : 450만원 - 1분위 : 315만원 - 2분위 : 202.5만원 - 3분위 : 135만원 - 4분위 : 112.5만원 - 5분위 : 90만원 - 6~7분위 : 67.5만원	0.7조원 - 자체노력 연계 : 0.6조원 - 특정분야 우대 인센티브 : 0.1조원	0.6~0.7조원 - 장학금 확충 - 등록금 인하	근로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대학생 주거비 경감
기초생보자, 1~7분위			
8~10분위			

□ I 유형 주요 내용

- ◇ 2013년부터 국가장학금 I 유형의 경우, 2012년에 비해 1인당 지원액을 높이고, 수혜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와 소득 1~7분위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 특히 기초생보자와 비교해 경제적 여건이 크게 낮지 않은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지급률을 크게 확대하여 해당 학생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2012년에는 국가장학금 II 유형과 교내장학금으로만 지원받던 소득 4~7분위 대학생에 대해서도 국가장학금 I 유형을 지원하여 등록금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I 유형 지급률·지급범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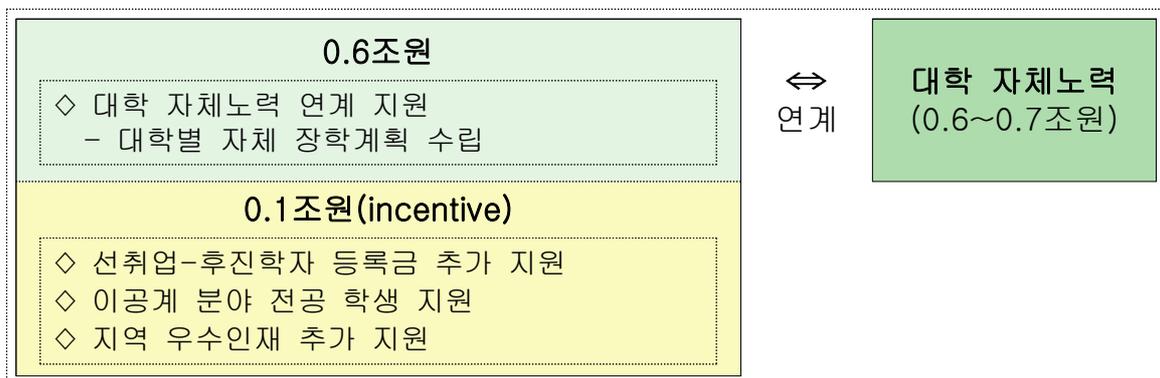
(단위 : 만원)

	기초생보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2012	450 (100%)	225 (50%)	135 (30%)	90 (20%)	미지원			
2013	450 (100%)	315 (70%)	202.5 (45%)	135 (30%)	112.5 (25%)	90 (20%)	67.5 (15%)	67.5 (15%)

* 기준지원액은 450만원

□ II 유형 주요 내용

《 II 유형 기본 구조 》



- ◇ 2013년 II유형의 총 규모는 7,000억원으로 이중 6,000억원을 2012년과 같이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 대학에 재학중인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II유형 지원액을 학교별로 배정하고 대학은 배정액에 따른 자체노력 계획을 수립한다.
- ◇ 또한 2013년에는 새롭게 II유형 안에 1,000억원 규모의 “특정분야 지원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 선취업-후진학자와 이공계 분야 전공 학생, 지역 우수인재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학비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II유형 인센티브는 참여 대학 중 자체노력 우수대학*과 특정분야 관련 인재육성 노력이 큰 대학**에 지원된다.
 - * 자체노력 규모가 큰 대학 또는 명목등록금 인하 위주로 자체노력을 수행하는 대학
 - ** 후진학 선도대학 및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대학, 지역 대학 등
- ◇ II유형 지원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올해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대학은 학점·성적 요건이나 소득분위 제한 등을 일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 대학이 II유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과부(한국장학재단)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장학금 금년 수준이상 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MOU를 체결해야 한다.
 - 대학은 MOU 내용에 따라 2013년 자체노력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대학의 자체 노력

- ◇ 2013년에는 II유형 장학금 6,000억원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체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 대학의 자체노력 방식은 2012년과 동일하게 “명목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추가 확충”을 인정하고 두가지 방식을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만, 2012년 총 1조원 규모의 자체노력과 지난 5년간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로 인한 대학의 재정상 어려움 등을 자체노력 인정방식 마련시 감안할 예정이다.
- ◇ 구체적인 자체노력 유도 방안은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12월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 등록금 부담 경감효과

- ◇ 정부재정(2.25조원)과 대학 자체노력(6,000억원 가정)을 통해 2011년 대비 7분위 이하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최대 34.7% 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특히, 3분위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대 40.3% 정도의 부담이 낮아져 저소득층 학생이 학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체 학생 기준으로 환산시 최대 약 27.0%의 부담 경감 효과 예상

□ 성적·이수학점 제한 및 지원 대학

- ◇ 2012년의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직전학기 기준 B⁰, 12학점 이상)은 2013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 다만, 신입생에 대해서는 '13년도부터 1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 7분위 이하 모든 신입생들이 I 유형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에는 미달하지만 긴급한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인해 지원 필요성이 높은 학생들은 II유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II유형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 (예시) 부모님의 사업 실패,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적 곤란,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 등

** 대학이 II유형 중 일부에 대해 성적·이수학점, 소득분위 등을 완화해서 적용 가능

◇ 국가장학금은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원된다.

- 유형은 소득연계최저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2013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재학생에게도 지원이 된다.
- II유형의 경우 방송대와 사이버대를 제외한 교과부와 MOU를 체결한 대학에 지원하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미참여 대학 포함)은 제한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 '12~'13학년도 연속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 신입생과 2학년생 지원 배제

'13학년도 신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 신입생 지원 배제

□ 기타사항

◇ 이번 2013년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정부가 제출한 '13년 예산안 규모를 기준으로 발표한 것이다.

- 향후 국회에서의 예산 협의와 관련하여 규모·지원방식 등에 대해 국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 기타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 정부는 국가장학금 외에도 대학생의 학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안정적 대학생활을 지원하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확대한다.

* 예산 및 지원 학생 확대 : ('12) 810억원, 2.7만명 → ('13) 1,430억원, 7.2만명

○ 또한 교육기부 등 근로 형태를 다양화하고 교외 근로비율을 높여 근로 경험이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중 등록금의 면제와 감액 규정에 대한 대학의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학에 소득분위 자료를 제공하여 동 규칙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인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등록금과 함께 주거비 등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지원도 늘려 나간다.

○ 기숙사 건립에 장기저리융자를 확보하여 기숙사 비용을 낮추고, 연합기숙사를 늘려 나가는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다른 지역 유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한다.

○ 또한 현행 생활비 대출*과는 별도로 타 지역의 대학생에게 주거 실비를 추가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 현재 생활비 대출가능 규모는 학기당 100만원 수준

- ◇ 이주호 장관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 시킴과 동시에 이번 방안이 일회성 대책이 되지 않도록 노력 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부담가능한 등록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나아가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과 병행 추진하여 ‘고등교육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6 탐방열차 타고 백두대간을 한눈에 체험할 수 있는 길 열린다.

- 국토해양부, 강원·충북·경북도와 공동으로 관광지 연결프로그램 개발 -

- ◇ 국토해양부는 11월초부터 내년 1월말까지 휴일에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를 한눈에 체험할 수 있는 탐방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 이번 백두대간 탐방열차 운행은 국토해양부와 강원·충북·경북 등 3개 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2 내륙권발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 백두대간의 비수익 철도노선을 활성화시키고 수도권 신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

○ '14년부터 본격추진 예정인 본 사업을 지속가능하고 성과 창출이 가능한 성공모델로 정립하기 위해 공모·선정한 5개 시범사업

권역	사업명
백두대간권	①백두대간 체험형 휴양·레저 활성화 사업
	②백두대간 역사문화 생태탐방 열차 운행
내륙첨단권	③미래철도·신교통 클러스터 조성 및 산학연 연계협력 사업
	④외국인을 위한 휴양형 첨단의료관광 연계협력 사업
대구 - 광주연계권	⑤특화 예술공연 공동제작 및 순회공연

- ◇ 11.3(토)에 청량리역과 강원도 민둥산 간 첫 운행에 들어가는 본 사업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 충북의 제천·단양, 강원도의 영월·태백·승부, 경북의 영주 등에 총 17회 왕복운행할 계획이다.(붙임)

- 관광지별 일정은 명승지 관광 및 지역 재래시장 방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관광객이 현지에서 식사를 구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 국토해양부는 이번 탐방열차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강원·충북·경북 등 초광역 연계협력 모델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 현재 본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마련 중인 「내륙권발전 종합계획」이 내실 있는 사업 중심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참 고

도백두대간 탐방열차 운행 일정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기존의 철도노선을 활용한 백두대간탐방 열차여행과 관광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 사업기간: '12. 11월 ~ '13. 1월(총 17회 운행 예정)
- 사업기관: 국토해양부, 강원, 충북, 경북
- 사업내용: 탐방열차 운행, 열차여행과 연계한 지역 팸투어 등

□ 운행일정

일 자	운 행 구 간	운 행 코 스
11/3(토)	청량리⇔민동산	민동산트레킹
11/4(일)	서울⇔청량리⇔단양⇔영주	(단양)단양장터, 온달관광지, 청풍호유람선, 도담삼봉 및 석문관광(영주)부석사, 소수서원/선비촌, 풍기인삼시장
11/10(토)	동인천⇔청량리⇔단양⇔영주	(단양)단양장터, 온달관광지, 청풍호유람선, 도담삼봉 및 석문관광(영주)부석사, 소수서원/선비촌, 풍기인삼시장
11/11(일)	서울⇔청량리⇔영월	장릉, 청령포관광(쪽배), 한반도지형 관광, 선암마을
11/18(일)	동인천⇔청량리⇔단양⇔영주	(단양)단양장터, 온달관광지, 청풍호유람선, 도담삼봉 및 석문관광(영주)청량산트레킹, 풍기인삼시장
11/24(토)	의정부⇔청량리⇔단양⇔영주	(단양)단양장터, 온달관광지, 청풍호유람선, 도담삼봉 및 석문관광(영주)부석사, 소수서원/선비촌, 풍기인삼시장
12/22(토)	서울⇔영월⇔정선⇔태백	(영월)장릉, 청령포, 선돌(신선암), 선암마을, 다하누촌 한우마을(정선)정선5일장, 정선레일바이크 체험장, 아라리촌 (태백)태백산 및 석탄박물관, 365세이프타운, 황지연못
12/23(일)	서울⇔영월⇔정선⇔태백	(영월)장릉, 청령포, 선돌(신선암), 선암마을, 다하누촌 한우마을(정선)정선5일장, 정선레일바이크 체험장, 아라리촌 (태백)태백산 및 석탄박물관, 365세이프타운, 황지연못
12/25(화)	서울⇔단양⇔영주	(단양)온달관광지, 다누리 아쿠아리움, 도담삼봉, 단양 구경시장(영주)부석사, 선비촌&소수서원, 무섬마을, 풍기인삼시장
12/28(금)~ 12/29(토)	서울⇔정동진⇔봉화⇔영주	(영주)부석사, 선비촌&소수서원, 풍기인삼시장(봉화)청량사, 춘향시장, 풍기인삼시장
12/29(토)~ 12/30(일)	서울⇔정동진⇔단양	온달관광지, 다누리 아쿠아리움, 도담삼봉, 단양 구경시장

* '13.1월은 일정 조정 중

7 경제활력 창출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12. 11. 6. 국무회의 통과 -

◇ 2012. 11. 6.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경제 활력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향후 경제 활력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사업용지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시행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2014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으로서, 납부된 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에 수납되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쓰여진다.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금액 : 농지면적(㎡) × 개별공시지가의 30% (제공미터당
상한액 : 50,000원)

◇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대상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개발구역, 공공건설임대주택,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사업시설 용지 및 체육시설 등 7개 사업 용지로

○ 경제자유구역 등 7개 사업 용지는 종전에도 한시적으로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 받았으나 감면기한이 종료되어 현재는 감면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재 감면을 하려는 것이다.

◇ 이번 경제자유구역·관광단지 등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농지 보전부담금의 재감면으로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 특히,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에 대한 감면으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농지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2. 11. 16.부터 2014. 12. 31.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참 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구 분	감면기간	감면비율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12.11.16 ~ 2014.12.31	농업진흥지역 밖 50% (택지조성 제외)
기업도시개발구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2012.11.16 ~ 2014.12.31	농업진흥지역 밖 50% (택지조성 제외)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법)	2012.11.16 ~ 2014.12.31	농업진흥지역 밖 100% (수도권은 50%)
관광지 (관광진흥법)	2012.11.16 ~ 2014.12.31	농업진흥지역 밖 100% (수도권·광역시 제외)
관광단지 (관광진흥법)	2012.11.16 ~ 2014.12.31	농업진흥지역 밖 100% (수도권·광역시 제외)
관광사업시설용지 (관광진흥법)	2012.11.16 ~ 2014.12.31	농업진흥지역 밖 50% (수도권·광역시 제외)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2.11.16 ~ 2014.12.31	농업진흥지역 밖 50% (수도권·광역시 제외)

8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연대보증제 폐지**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 ◇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 농림수산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로 인해 은행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농업정책자금의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는 농협 상호금융에서 최근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에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 * 상호금융기관 중 농협이 10. 2.부터 연대보증 폐지
- * 이번 조치로 농협 외 수협·산림조합 등 타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추가로 폐지될 예정
-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신용대출의 방법을 무보증 신용대출로 한정함으로써 기존 연대보증을 통한 신용대출을 폐지하는 대신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정책자금 대출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 다만 연대보증제 폐지에 따른 기존 정책자금 대출자들의 어려움

등을 예상하여 기존에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된 정책자금은 종전과 같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등이 가능하며, 법인 대출 시 보증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필수입보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은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 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며 이 기간 중에 의견이 경우에는 전화 02-500-1748, 팩스 02-503-5467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

9]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 -

◇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조 2,317억원 증액(6%)한 39조 6,64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다가구주택'에 세(貰) 들어 사는 김모 씨는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했다. 발코니 구조변경 설치 기준에서 발코니 확장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 발코니를 자유롭게 구조변경 하여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제도개선 의 일환으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개소수와 관계 없이 모두 확장하여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고시)을 개정하여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종전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05. 12월 시행) 에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은 모든 발코니에 대하여 구조 변경을 허용한 반면, 단독주택은 2개소로 제한*하고 있었다.

* (제한 이유) 단독주택은 단위 평면이 다양하고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

○ 그러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과 유사한

데도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2개소로 제한됨에 따라 세대별 발코니 확장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 * (다중주택) 학생·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취사시설 제한)로,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 ** (다가구주택)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19세대 이하
- *** (다세대주택) 주택 층수가 4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분양가능

◇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등에 설치되는 발코니도 자유로이 구조 변경하여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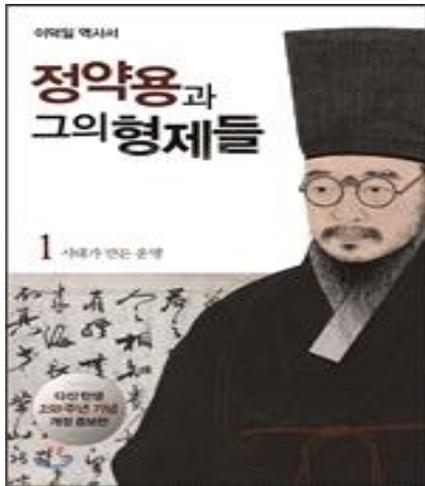
□ 주택의 종류

(단위 : 동수)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계 (4,341,028)	3,622,674	6,868	508,651	202,835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금번 개정으로 추가된 발코니 확장가능 주택

행복한 책 읽기



- 도서명 :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 저자명 : 이 덕 일
- 출판사 : 김 영 사
- 출판일 : 2012. 10. 12
- 페이지 : 318쪽
- 가 격 : 14,400원

책 소개

정약용 탄생 250주년 기념 개정증보판!

사료에 대한 철저하고 세심한 고증은 물론, 대중과의 호흡을 통해 역사 집필가로서의 신념과 문체를 묵묵히 지켜왔던 역사가인 이덕일이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을 초판 발행 7년만에 개정증보판으로 다시 출간되었다.

그동안 저자는 인물들의 전기에 남다른 애정을 쏟아 본인만의 독특한 영역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이 책은 개혁과

수구의 대립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조선 후기, 그 희망과 좌절의 기록을 마치 사극을 보듯 현재진행형의 살아있는 드라마로 만든 역사서라는 점에서 **다산 탄생 250주년을 기념한 이 복간**이 더욱 뜻 깊다. 또 8년여 전 출간된 초판본에 비해 독자들이 더욱 쉽고 입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사진 자료와 해당설명, 다산의 가계도 등을 추가 삽입하였다.

□ 책 속으로

다산 탄생 250주년에 필자는 그가 지금 사회를 본다면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다산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다산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다시 손본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 조금이라도 독자의 시각으로 현재를 비어 이 부정현실이 개선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아주 작은 역할이나마 한 것이 아닐까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열한 살 때 부친 사도세자가 노론 벽파에 의해 비참하게 죽음을 목도한 정조는 서두르지 않았다. 부친을 죽인 세력에 둘러싸인 외로운 국왕이지만 미래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당색에 물들지 않은 청년들의 것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그를 인내하게 했지만 이는 부친의 원수와 아침저녁으로 얼굴을 맞대고 웃어야 하는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일이었다. 그런 인내 속에서 정조는 新세력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리고 그런 정조의 기다림 속에서 정약용 형제가 자라고 있었다.

□ 책 줄거리

개혁과 수구의 처절한 싸움이 벌어졌던 조선 후기, 정조와 정약용, 그리고 그 형제들의 희망과 좌절의 기록이 다시 한 번 현재진행형의 살아 있는 드라마로 생생하게 펼쳐진다!!

열한 살 때 부친 사도세자가 노론 벽파에 의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목도한 정조는 반란과 암살의 위협 속에서도 초계문신제도 신설, 규장각 설치 등을 통해 신진세력을 양성하며 사회경제적 개혁과 문예부흥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조심스레 관철해나갔다.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던 용상에서 그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은 바로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같은 새로운 사상과 지식으로 무장한 청년들이었다.

실학의 완성자! 개혁 군주 정조의 오른팔! 50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끝내 완성해낸 집념의 지성인, 문학·역사·철학·과학기술 등 모든 학문분야를 섭렵한 천재,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한 실천적 지식인…… 오늘날 다산 정약용을 수식하는 단어는 수없이 많지만 실제로 그는 타고난 천재라기보다는 노력형에 가까웠고, 뛰어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배권력의 집요한 공격으로 인해 그 삶은 고달팠다.

그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이벽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성균관에 입학한 지 6년이 지나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정조의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정조의 혹독한 훈련과 부단한

노력을 통해 그는 개혁의 중심이자 최대의 사상가로 성장하게 된다. 그가 곡산에서 부사로 재직할 때 펼친 선정은 나중에 국문을 당할 때 민심을 두려워한 지배층이 그를 사형시키지 못할 정도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직접 쓴 「자찬 묘지명」을 비롯해 안타깝게 스러져간 당대 인물들에 대한 묘지명을 저술하며, 불의한 시대의 검열을 넘어 후세에 역사의 진실을 전하는 데 주력하기도 했다. 당대 현실에서 패배한 듯 보였으나 결코 희망을 묻어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부당한 박해도, 뼈저린 외로움과 생활의 누추함도 그의 정신을 잠식하진 못했다. 우리는 이렇듯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을 통해 삶의 모순을 뛰어넘은 다산의 위대한 정신을 감동의 순간으로 만날 수 있다.

정약전은 『자산어보』 서문에서 “자산은 흑산이다. 나는 흑산도에 유배되어 있어서 흑산이란 이름이 무서웠다. 자玆 자는 흑黑 자와 같다.”라고 쓸 정도로 시대의 어둠을 두려워했던 인물이었지만 아우의 질문을 받으면 참고서적 하나 없는 흑산도에서 놀라운 수준의 식견을 보여주던 든든한 형이기도 했다. 다산처럼 학문에만 전념하지는 않았으나 모든 사대부들이 경전 연구에 매진하는 현실에서 오히려 벼슬을 거부한 채 민중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어류 생태 연구서 『자산어보』나 정부의 소나무 정책을 비판한 『송정사의』 등을 집필한 정약전이야말로 진정한 실학자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최초로 영세를 받은 이승훈은 정약용 형제의 매형이었고, 조선 천주교회를 창립한 시조로 꼽히는 이벽은 그들의 큰형 약현의 처남이었다. 정약용 형제와 천주교는 이렇듯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지만, 정약전과 정약용이 제사 문제 등 성리학과 충돌되는 면 때문에 천주교를 결국 저버린 반면, 늦게 받아들인 정약중은 끝까지 신앙을 고수했다.

그는 부친과 형제들을 떠나 타향에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잠시도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양반 지식인 신자로서 자신의 역할은 교리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일임을 깨닫고 조선 최초의 천주교 교리서 『주교요지』를 저술하기에 이른다.

『주교요지』에는 당시 사람들이 천주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는 신유박해 때 사형장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반대로 목덜미를 형틀에 대고 하늘을 보았다고 한다. 자신은 뗏뗏하므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죽겠다는 것이었다. 당황한 망나니가 헛칼질로 목을 반밖에 자르지 못하자 그는 벌떡 일어나 성호를 그었다고 전해진다.

당대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인간 중심의 새로운 사상으로 폐쇄적이고 닫힌 체제의 벽을 뛰어넘으려고 했던 정약용 형제들은 이렇듯 모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자유롭고 인간적인 열린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몸을 바쳤던 그들의 치열한 삶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다.

또 자칫 무미건조한 학습서가 될 수도 있는 역사 분야에서 새로운 시각과 해석과 흐름을 제시하는 이덕일 저자의 필치는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되 살아난다. 정약용 탄생 250주년을 맞아 개정증보판으로 새로 출간된 이번 책을 통해 더욱 풍성해진 그 생생함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만나볼 수 있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2년 11월 23일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 ☎ (042) 606-5021 / 팩 스 (042) 606-5029